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부·서류 등 검사 거부 등에 대한 형벌 규정 과태료 전환〉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79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장부·서류 등 검사 거부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	2
2. 조문 정비에 따른 몰수의 범위에 관한 검토	11
3. 부 칙	15
IV. 입법의 재정영향	17
[참고자료]	18

I. 제안경위

1. 제안자: 문대림의원 등 12인

2. 제안일: 2025. 12. 31.

3. 회부일: 2026.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양식장,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의 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대한 출입 검사 등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0조 등).

Ⅲ. 검토의견

1. 장부·서류 등 검사 거부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 제71조제1항를 위반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0조(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80조(벌칙) <u>제26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u> ----- ----- -----.
1. <u>제26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u>	<삭 제>
2. <u>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u>	<삭 제>

<u>르지 아니한 자</u> 제81조(과태료) <신 설>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제81조(과태료) ① 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	---

나. 검토의견

- ☐ 현행법¹⁾은 양식업의 조정,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위생 안전, 불법 양식업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어업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양식장,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의 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출입·검사·보고 요구 거부 등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1) 「양식산업발전법」

제71조(출입·검사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업의 조정, 양식장 또는 양식수면의 위생 안전, 불법 양식업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어업감독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양식장,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의 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로,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2025년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하여 보고·검사 위반 등 18개 유형의 경미한 의무위반²⁾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개선과제를 추진한 바 있음.

□ 개정안은 출입·검사·보고 요구 거부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경미한 위반행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행법의 다른 행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출입·검사·보고 요구의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출입·검사 등을 규정한 현행법 제71조 관련 과태료 규정³⁾을 살펴보면, 제71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와 제71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와 장애물의 이전·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500

2) 통지·표시·조사·검사 등 「법령집안심사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18가지([참고 1] 참조)

3) 「양식산업발전법」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71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4. 제71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와 장애물의 이전·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다른 검사·답변 의무 위반행위는 과태료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음.

- 한편, 현행법 제80조제1호4)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양식업 면허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양식업 보전 및 육성이라는 법의 핵심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관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실체적 위반행위인 반면,

제2호의 출입·검사·보고 요구의 거부 등은 행정청의 관리·감독 절차에 대한 비협조로서 환경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기보다는 행정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는 단순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제2호의 위반행위를 제1호의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에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

4) 「양식산업발전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2. 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6조(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3. (생략)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생략)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생략)
8.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외국과의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으나, 최근 5년간 법 제80조제2호 벌칙 적용 건수가 전무한 점을 고려하면, 1천만원의 벌금형에서 1천만원의 과태료로 전환하더라도 제재의 억지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행정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⁵⁾ 다만, 벌칙의 존재로 인해 범위반이 제한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과태료 전환 후 제재 완화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 점검은 필요해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헌법재판소(2018.8.30., 2017헌바368)는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종류와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라고 판시하였으며,

5)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전히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 부과만으로도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결정의 반대의견은 “행정질서벌만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형벌을 도입한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2024)」에서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이 특정한 사항의 보고의무나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과태료 상한액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종전 벌금형의 상한은 1천만원이었으나 이를 1,000만원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일반적으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때는 제재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금액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행법의 다른 검사·답변 의무 위반행위⁶⁾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입·검사·보고 요구거부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서로 달라야 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요청됨.

또한, ‘출입·검사·보고 요구 거부’ 행위 유형에 대한 과태료 액

6) 「양식산업발전법」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71조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14. 제71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와 장애물의 이전·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수의 통계적 최빈값과 중앙값은 모두 5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500만원이 입법 실무상 가장 보편적인 제재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⁷⁾ 출입·검사·보고 요구 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유사입법례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유사입법례⁸⁾ 과태료 상한액 >

법률	과태료 상한액
「동물보호법」	-보고·자료제출 거부: 100만원
「선원법」	-보고 및 서류 제출 거부: 200만원 -출입·검사 거부: 2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출입·검사 거부: 3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출입·검사 거부: 300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입·검사 거부: 1천만원
「전기통신사업법」	-검사 거부: 1천만원

일반적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 이하이되, 행위 주체가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일 때 제재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한액이 1천만원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행정조사의 순응성을 확보하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 취지와 입법 실무상의 일반적인 기준이 500만원이라는 점, 현행 법상의 유사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500만원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전 1천만원의 벌금형을 500만원의

7)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4)」, 602p.

8) [참고 2] 참조

과태료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수산업⁹⁾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고 있는 「수산업법」¹⁰⁾에서도 현행법과 같이 출입·검사·보고 요구 규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른 출입·검사 권한도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이 수행하는 점, 출입·검사 등 규정 위반에 따른 「수산업법」과 현행법과의 법익 침해 정도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산업법」과 현행법의 벌칙을 동일한 유형 및 수준으로 하는 방

9) 「수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업·양식업·어획물 운반업·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유통업을 말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10) 「수산업법」

제69조(어업감독 공무원)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수산업법」의 출입·검사·보고 요구 거부에 관한 벌칙규정도 개정안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¹⁾).

- 해양수산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을 제시함.

11)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양식산업발전법」은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식업 관련 사항을 분법한 법률(2019. 8. 27. 제정)로서 양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입·검사·보고 요구 규정 위반에 대한 법익침해 정도는 차이가 없으며, 향후 「수산업법」에서도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임

2. 조문 정비에 따른 몰수의 범위에 관한 검토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은 출입·검사 관련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안 제80조에 따라 몰수의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2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2조(몰수) ①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양식수산물·시설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7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양식수산물·시설물을 몰수하여야 한다.	제82조(몰수) ① ----- 제80조의-----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현행법 제80조제1호¹²⁾를 제80조본문으로 개정하려는 안 제80조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에 따른

12) 「양식산업발전법」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몰수의 적용 범위를 동일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그런데,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포 후 시행 전 법률¹³⁾(법률 제21281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12. 31. 시행)에 따라 몰수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공포 후 시행전 법률 제80조(벌칙)은 제2항에서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시설물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82조에 따라 몰수의 범위를 제80조 전체로 규정할 경우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몰수를 해야하므로 이에 대한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법률 제21281호)
제80조(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u>	제80조(벌칙) 제26조제1항 <u>제1호·제4호·제6호·제</u>	제80조(벌칙)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

13) 「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21281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12. 31. 시행) 주요 내용
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2. 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시설물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2. 제71조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82조(몰수) ①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호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양식수산물·시설물은 몰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8호 또는 제9호(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 -----. <삭 제> <삭 제> 제82조(몰수) ① ----- -----제80조의----- ----- -----.	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시설물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몰수) ① (현행과 같음)
---	---	---

□ 몰수14)는 범죄 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14)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2024), p.582

‘몰수’란 범죄 반복의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서 독립하여 과할 수는 없고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해지는 부가형으로서 「형법」 제48조에 따라 관사에게 몰수 재량권이 부여된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다. 필요적 몰수이거나 몰수 대상·방법·절차 등 위 원칙에 대한 특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행정벌칙으로 규정하고 임의적 몰수의 경우에는 따로 규정하지 않도록 한다.

로 범죄행위와 관련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서 독립하여 과할 수는 없고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해지는 부가형으로,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 양식시설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스크류 양식시설 끼임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위반할 경우 몰수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몰수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수산업법」의 입법례¹⁵⁾를 참고해 볼 때 현행법에 따른 몰수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은 적절한 것이라 판단됨.

15) 「수산업법」

제110조(몰수) ①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제3호·제5호 및 **제109조**의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 또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제106조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76조(어구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이하 “수면”이라 한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3. 부 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안 부칙).

[표]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제도의 제도 및 안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1조제2항·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¹⁶⁾에 따라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¹⁷⁾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벌에 처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¹⁸⁾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16)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1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18)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895-896

IV. 입법의 재정영향

-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⁹⁾.

문 의 처
02)6788-5419

19)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법령집안심사기준」 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 ① (인허가 등) 특정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행정청의 인허가, 승인, 지정, 등록 등에 관한 의무 위반행위
- ② (신고) 특정 영업이나 행위를 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영업 개시신고, 변경신고, 승계신고, 휴·폐업신고, 행위신고)
- ③ (보고)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이 특정한 사항의 보고의무나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특정 사실의 발생을 행정청에 통지, 통보, 신고할 의무 불이행, 법령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허가증·요금표 등 표지물의 게시 위반 등)
- ④ (행정상 명령)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일정한 법률상의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受忍) 의무 등을 불이행하는 행위(이행명령, 개선명령, 시정명령, 조치명령, 보완명령)
- ⑤ (조사)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직원이 그 감독을 받는 사업장, 공장, 창고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를 조사하는 등을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조사의 방해·기피·회피, 자료제출·설명·보고 명령(요구) 불응, 출석이나 진술·답변 요구 불응)
- ⑥ (계획) 업무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계획, 대책, 규정, 기준 등을 수립·작성하고 이를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립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⑦ (유사명칭) 법률상 특정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님에도 해당 자격명칭을 사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구성된 특정 기관의 명칭을 그 기관 외의 자가 사용하는 행위
- ⑧ (교육) 법률상 일정한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불이행하거나 관리자 등이 교육대상자에 대해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교육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보수교육, 연수교육, 안전교육, 위생교육)

- ⑨ (강제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 ⑩ (게시)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나 요금 등의 정보를 영업소, 사업장 등에 게시하지 않는 행위
- ⑪ (보존) 법령에 따라 기록·보존되어야 할 사항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와 장부를 비치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
- ⑫ (통지) 특정 사실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통보,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외부에 공지·공시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⑬ (인력배치) 업무상 특정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인력을 선임, 지정, 배치하지 않는 행위
- ⑭ (인증) 사용이나 판매를 위해 사전에 검정이나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서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됨
- ⑮ (검사) 안전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받아야 하는 검사나 점검을 받지 않는 행위
- ⑯ (표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수단에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⑰ (토지출입)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 등 권한 있는 자가 공사, 조사,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나 공무원 등이 토지 출입 시에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⑱ (기타) 준수사항 위반, 겸직금지 등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4. 제86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제86조(출입·검사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선원법」

제17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4.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5. 제12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 출입을 거부·기피·방해한 사람,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또는 거짓 진술을 한 사람

제56조의2(보고 및 서류의 제출 요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 및 임금등을 체불당한 피해 선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③ 검역관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 포장 및 그 밖의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

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제35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건설현장·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2조(검사·보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의 설비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